

대선보도 심의 중간점검



여종국
기사심의팀 팀장

우리 위원회는 지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 기사 심의가 한창이다. 물론 같은 날 치러지는 경남도지사과 서울시 교육감 등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의 선거기사는 물론이고 사설이나 논평, 광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선거기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이를 시정요구할 경우에도 심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제재대상으로 떠오른 기사들은 칼럼 등에서 ‘OOO후보 불가론’으로 모 후보는 안 된다는 식의 보도이다. 모 일간지의 경우 특정 후보를 거명하며 부정적인 사실만을 부각하여 비판을 넘어 비난조로 연일 칼럼을 게재하였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신문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쳐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판단으로 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또 다른 주요 제재대상은 후보자들의 유세활동이나 정책발표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보도이다. 얼마 전 어느 지역의 모 일간지는 1면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발표 사실을 사진과 함께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이것은 신문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정보를 불충분하게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 광고를 게재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모 일간지는 한 후보자의 친인척에 관한 책 광고를 게재하면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광고하여 경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 심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인데,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이다. 모 시사주간지는 역술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모 후보에 대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천운을 타고 났다.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 역시 독자의 단순한 흥미 유발을 넘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 지지를 유도했다는 판단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보도요건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대통령선거의 선거기사 심의는 다양한 유형의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선거 보도 심의의 핵심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을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도했는지의 여부이며, 이를 독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선거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이며,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보도에 의해 훼손되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이 선거기사 심의의 존재 이유이다. 